

# 서울특별시 공유재산(서울복지타운) 서울시복지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

의안 번호	144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10월 16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 이유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서울복지타운 건물 일부를 서울특별시 출연 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이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에 따라 사용료 면제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## 2. 주요 내용

### 가. 공유재산(서울복지타운) 현황

- 주소: 마포구 백범로 31길 21(공덕동 370-4, 10 / 舊 한국산업인력공단 별관동)
- 규모: 지하 2층~지상 10층(연면적 10,830.25㎡)
- 재산관리관: 복지정책과장 ※ 지하1층~4층: 평생교육과장 분임관리관 지정('16. 8.)

### 나. (서울시복지재단) 공유재산 사용 현황

- 허가기간: 2022. 1. 1.~2026. 12. 31. (5년)
- 허가조건: 허가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등
- 허가방법: 수의계약(「공유재산법」 제20조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13조)
- (서울시복지재단) 사용 현황

사용자	위치(층)	연면적(㎡)	주요 용도	재산관리관
서울시복지재단	5층	950.4	대회의실, 교육실, 소회의실 등	복지정책과
서울시복지재단	8~10층	2,715.22	사무공간	

## 다.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

- 市 출연기관이 비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가능
  -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이며, 서울시복지재단이 서울복지타운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정관에 따른 목적사업(복지사업)으로서 비영리사업에 해당
  - 市 출연기관 비영리사업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시의회 동의 절차 이행할 경우 「공유재산법」 제24조 등에 따른 사용료 감면이 가능함
- 조세 절감, 행정 및 회계 비효율 방지(개선)를 위해 사용료 감면 필요
  - 재단에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(징수)할 경우 서울복지타운 사용료만큼의 복지정책실 세출(출연금) 증액이 필요하며, 사용료만큼 세입도 함께 증액되는 구조임
  - 조세 지출 절감\*, 행정·회계 비효율 개선을 위해 재단 사용료 면제 추진 바람직

\* 불필요한 세입·세출의 상계(相計)가 지속됨에 따라 국세(부가가치세) 지출 부담 증가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

나. 예산조치: (시의회 동의 시) 2024년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(청사사용료) 미편성 또는 감추경(감액) 조치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: 서울특별시의회 동의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후 사용료 면제

※ 작성자: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김기혁 (☎ 2133-7315)